2025 년 12 월 19 일

동아특수화학㈜

아동 노동 금지 방침

승인자	서무 이한경 차장
제정	2025년 12월 19일
개정	최초 제정
문서 관리 번호	DGP-0209
문서 관리자	서무 이한경 차장

목차

01. 목적 3
02. 정의 3
03. 범위 3
04. 세부 방침 3
05. 아동 노동 방지 절차 4
06. 아동 노동 발견 시 시정 절차 5
07. 연소자의 권리 보호 6

01. 목적

본 문서는 동아특수화학㈜ (이하 '회사')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방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모든 종류의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공급망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여 아동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02. 정의

1) 아동: 15 세 미만인 자(의무교육 이수 중인 18 세 미만인 자를 포함)
2) 연소자: 15 세 이상~18 세 미만인 근로자
3) 아동 노동: 15 세 미만인 자 또는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18 세 미만인 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근로 혹은 일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교육이 손상되거나 방해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03. 범위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적용된다.

04. 세부 방침

1) 금지 및 준수사항
   회사는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고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회사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강제노동, 부당노동 등 아동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직원 역시 아동 노동 금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하며 아동 노동이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사는 공급망 내에서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2) 법률 및 규정 준수
   회사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률 및 규정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3) 보고 및 피드백
회사는 아동 노동 관련 사건 및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시정 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한다. 외부 감독기관 등을 통한 제 3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조치한다.

4) 개정 및 개선
본 정책은 필요에 따라 수정되거나 개선될 수 있으며, 새로운 법률 및 규정, 업계 표준 및 사회적 기대에 따라 정책 개정이 가능하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전달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05.아동 노동 방지 절차

1) 정책 및 규정 수립
회사는 아동 노동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규정을 수립한다. 본 정책은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2) 채용 과정에서의 아동 노동 방지
(1) 연령 확인 : 모든 지원자나 채용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연령과 관련하여 제공한 서류 혹은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연령을 확인한다. 연령과 관련하여 제공한 서류의 인증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현지 법규에 따른 증빙서류의 최소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2) 채용 과정 : 채용 과정에서 아동 노동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연령 및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 인력 관리 및 교육
(1) 직원 교육 : 모든 직원에게 아동 노동 금지 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채용 책임자나 관리자는 아동 노동 방지에 대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정기적인 교육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아동 노동 금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식과 이행을 유지한다.

4) 모니터링 및 감사
(1)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 아동 노동 방지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외부 감사 : 필요시 독립적인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아동 노동 방지 정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5) 신고 및 조치

(1) 내부 신고 체계 : 직원들은 아동 노동 관련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2)후속 조치 : 발견된 아동 노동 관련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06.아동 노동 발견 시 시정 절차

아동 노동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고용관계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아동 확인 및 신고 접수
   - 아동 노동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관련 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
2) 조사 및 면담
   - 아동 노동이 확인되면 담당부서(총무팀)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아동과의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을 통해 아동 신원 및 근로 조건 등 수행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의료 및 안전 확인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4) 고용관계 종료 및 보호 조치
   - 아동과의 고용관계를 즉각 종료 후,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한다.
5) 법적 조치 및 보호 대책
   -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아동 노동 사례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보호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6) 보고 및 피드백
   - 사건 조사와 시정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수렴한다. 사건에 대한 교훈을 얻고, 이를 향후의 예방 및 대응에 반영한다.

※ 아동 보호 대책

- ✓ 아동이 원한다면 적법한 연령이 되었을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 ✓ 아동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지자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의무 교육 이수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한다.
- ✓ 회사가 제공하는 교정 프로그램에 동의할 경우, 아동이 최저 노동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 및 추적한다.

07. 연소자의 권리 보호

회사는 18 세 이상인 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사정으로 15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

1) 준수사항
   회사는 연소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법률이 정한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철저히 준수한다.
   - 회사는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 후견인의 동의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 구비한다.
   - 회사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 일에 7 시간, 1 주에 35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하에 1 일 1 시간, 1 주 5 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 회사는 연소자를 야간(오후 10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 회사는 연소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다.
   - 회사는 연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상기 외 근로조건은 본사 소재지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따른다.
   - 해외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국가의 아동 및 연소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본 항과 현지 법률이 정한 보호 조치가 상충될 경우, 연소자의 권익 보호에 더 유리한 쪽을 따른다.
2) 연소근로자의 과중 업무 시정조치

회사는 모든 연소 근로자들의 과중 업무수행을 금지한다. 연소자의 과중 업무 수행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과중 업무 수행을 즉시 중지시키고, 건강검진 및 근무지 변경 기회 제공을 포함한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2025. 12. 19

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철